

전국 지방자치단체 인사청문회 관련 조례입법률 46.9%에 불과

- 인사청문회의 실효성 높이기 위한 조례 입법 필요

작성 : 구본승 객원연구위원

나라살림연구소 / 서울 마포구 동교로 201 권영빌딩 5층, 02-336-0619, www.narasallim.net

인사청문회 조례 제정 현황 및 쟁점 규정 분석

- 요약 -

- 지난해 3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청문회가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됨에 따라 전국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입법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국 243개의 지방의회 중 114개의 지방의회가 조례입법을 한 것으로 나타나 조례입법률은 46.9%였음
 - 광역의회 17곳 중 14곳(82.4%)으로 광역의회 중 인사청문회 관련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의회는 울산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의회, 전라남도의회 등 3곳임
 - 기초의회 226곳 중 100곳(44.2%)이 관련 조례를 제정했으며 대전 지역의 모든 기초의회(5곳), 울산 지역의 모든 기초의회(5곳)가 인사청문회 관련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 광역의회의 인사청문회 관련 조례 분석을 통해 10가지 쟁점규정 도출
 - 1) 인사청문요청의 임의규정-강행규정 여부, 2) 연임 시 인사청문요청 대상 규정 여부, 3)인사청문회 시행 단위(상임위,특위)와 위원 구성방식, 4)인사청문요청안의 첨부서류, 5)질의요지서 사전제출 규정 폐지 여부, 6)자료제출요구 대상에 인사청문대상자 포함 여부, 7) 인사청문 준비요청서 제출 규정 여부, 8)인사청문사항 규정 여부, 9) 임명철회 건의 규정 여부, 10)별지 서식 첨부 여부
- 인사청문회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취지에 맞는 인사청문회 조례 입법을 통해 인사청문 진행을 대비해야 할 것임
 - 인사청문의 실효성을 높이는 규정을 반영한 조례를 제개정 필요하며 타 지자체 사례 등을 통해 인사청문회 시행 세부 방식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근본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 인사청문의 쟁점(인사청문요청 의무화 여부, 대상 확대 여부 등)에 대한 법제도 개선이 필요함

1. 분석 이유

- 지방자치단체장이 부적격 인사, 측근 인사를 지방공기업이나 출자출연기관의 장으로 임명하여 문제가 된 경우가 다수 발생해 지방자치단체 인사청문회 도입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지방자치단체 인사청문제도가 도입되었음.
- 지방자치단체 인사청문제도는 직무수행 능력과 자질, 공직자로서의 도덕성을 사전에 검증하여 투명한 인사가 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지난해 3월 지방자치법에 인사청문회 관련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전국 지방의회는 관련 조례를 입법하고 있음.

조례 제정 후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청문요청안이 접수된 지방의회에서는 조례 규정에 따라 인사청문회를 개최하고 있음. 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의회에서 의결된 인사청문회 조례를 재의 요구하거나 인사청문요청을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함.

- 인사청문회 조례제정 현황 및 쟁점 규정 분석을 통해 조례 입법의 필요성을 비롯해 인사청문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조례 입법 방향, 인사청문회 세부 시행 방법과 관련한 시사점을 검토하고자 함

2. 현황

2-1. 법적 근거

- 일부 지자체에서 협약방식으로 진행되어왔던 지방자치단체 인사청문회가 지난해 3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되어 지난 9월부터 시행되고 있음
 - 인사청문 대상은 정무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 부지사를 비롯해 지방공사사장, 지방공단 이사장, 출자출연기관 등의 직위 중 조례로 정하는 직위의 후보자를 대상으로 하며 단체장이 지방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인사청문회의 세부 절차 및 운영에 관해서는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표1> 지방자치단체 인사청문회 관련 「지방자치법」 규정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인사청문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위 중 조례로 정하는 직위의 후보자에 대하여 지방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다.

1. 제123조제2항에 따라 정무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부지사
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행정시장
3.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의 사장과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의 이사장

4.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전단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의 기관장

② 지방의회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인사청문 요청이 있는 경우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후 그 경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인사청문회의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47조의2 신설(2023.3.21.)

부 칙 <법률 제19241호, 2023. 3. 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지방공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3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연임시킬 수 있다”를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임시킬 수 있다”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에 따라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2-2. 인사청문 대상 현황

□ 정무직 국가공무원인 부시장·부지사

○ 서울특별시와 경기도는 최대 3명의 부시장·부지사(정무직·일반직 국가공무원 2명, 정무직·일반직·별정직 지방공무원 1명)를 둘 수 있으며 그 외 광역시도는 최대 2명의 부시장·부지사(정무직·일반직 국가공무원 1명, 정무직·일반직·별정직 지방공무원 1명)를 둘 수 있음.

- 그런데, 지방자치법에는 정무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부지사만이 인사청문회 대상 직위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지방공무원인 정무직, 별정직 부시장·부지사는 인사청문 대상이 되지 못함.

<표2> 특별시, 광역시도, 특별자치시도의 부시장·부지사의 수

특별시 부시장 수 : 3명 이내(정무직, 일반직 국가공무원)	-다만, 2명이나 3명을 두는 경우에 1명은 정무직·일반직 또는 별정직 지방공무원
광역시, 특별자치시의 부시장과 도, 특별자치도의 부지사 수: 2명 이내(정무직, 일반직 국가공무원/인구 800만 이상 광역시나 도는 3명)	※정무직, 일반직 국가공무원인 부시장·부지사는 시·도지사 제청으로 행정안전부장관거쳐 대통령이 임명

□ 제주특별자치도 부지사, 행정시장, 감사위원장

- 행정시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도지사가 임명하지만 도지사 후보자가 행정 시장으로 예고한 사람을 임명할 경우에는 정무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 특별법」 제11조)
- 제주도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 특별법」 제43조에 따라 별 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지사와 의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하는 감사위원장에 대해 인사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

□ 지방공사 사장, 지방공단 이사장

-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공사·공단의 수는 총 162개(광역 47개, 기초 115개)로 공사·공단이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130개(광역17,기초113)로 전체 지자체의 53.5%임

▶ 지방공기업은 지방공기업법 제2조 제1항의 10가지 사업을 수행하며, 운영 주체가 공무원인 직영기업과 민간인인 공사,공단으로 구분됨.

▶ 공사, 공단은 지방자치단체가 50%이상 출자한 독립법인으로 지방자치단체와 독립적으로 운영됨. 공사, 공단의 구분은 손익금의 자체 처리가 가능한가에 따라 공사는 가능함. 공단은 지방공기업법상 손익금 처리규정이 없어 수익성 위주의 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함.

<표3> 지방자치단체 공사,공단 현황 (2024.3.31.기준)

총 162개(광역47개, 기초115) 해당 지자체수: 130(광역17,기초113)/전국 지자체수: 243(광역17,기초226)
▶ 강원특별자치도-공사1/강릉시,동해시,속초시,영월군,원주시,정선군,춘천시,태백시,평창군-공사2,공단7 (전체 광역1,기초18)
▶ 경기도-공사4/30개 기초지자체(동두천 제외)-공사25(구리시2),공단6 (전체 광역1,기초31)
▶ 경상남도-공사1/거제시,김해시,밀양시,사천시,양산시,창녕군,창원시,통영시,함안군,합천군-공사4,공단7(창원시2) (전체 광역1,기초18)
▶ 경상북도-공사2/경주시,구미시,김천시,문경시,안동시,영양군,영천시,청도군,포항시-공사3,공단6 (전체 광역1,기초22)
▶ 광주광역시-공사3,공단1/광산구,북구,서구-공단3 (전체 광역1,기초5)

▶대구광역시-공사3,공단1/달성군-공단1 (전체 광역1,기초9)
▶대전광역시-공사3,공단1/기초-없음 (전체 광역1,기초5)
▶부산광역시-공사3,공단2/남구,기장군-공단2 (전체 광역1,기초16)
▶서울특별시-공사4,공단2/24개자치구(서초구제외)-공단24 (전체 광역1,기초25)
▶세종특별자치시-공사1,공단1 (광역1)
▶울산광역시-공사1,공단1/남구,북구,울주군,중구-공단4 (전체 광역1,기초5)
▶인천광역시-공사3,공단2/강화군,계양구,남동구,미추홀구,부평구,서구,연수구,중구-공단8 (전체 광역1,기초10)
▶전라남도-공사1/여수시,완도군-공단2 (전체 광역1,기초22)
▶전북특별자치도-공사1/익산시,장수군,전주시-공사1,공단2 (전체 광역1,기초14)
▶제주특별자치도-공사3 (광역1)
▶충청남도-공사1/당진시,보령시,부여군,아산시,천안시-공사2,공단3 (전체 광역1,기초15)
▶충청북도-공사1/단양군,청주시,충주시-공사1,공단2 (전체 광역1,기초11)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홈페이지- 지방공기업제도운영 게시판 2024.5.1

□ 출자·출연 기관장(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 제2조제1항 전단)

○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은 총 843개(광역262, 기초581)로 출자·출연기관은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228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출자기관은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발전, 지역개발 활성화하는 목적을 위해 개별법령에 따라 지자체가 자본금의 전액 또는 일부(10% 이상)를 출자하여 설립한 주식회사 ※예: (주)킨텍스, 농업회사법인○○유통(주), (주)○○산업단지개발 등
▶출연기관은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예술,장학,체육, 의료 등의 목적을 위해 개별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재산의 전액 또는 일부를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 법인 ※예: 지방의료원,지방연구원,신용보증재단,복지재단,문화재단,장학재단 등

<표4>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현황(2024.3.31.기준)

총 843개(광역262, 기초581)
해당 지자체수: 228(광역17,기초211)/전국 지자체수: 243(광역17,기초226)
▶강원특별자치도24/강릉4,고성3,동해3,삼척3,속초1,양구2,양양2,영월4,원주4,인제2,정선

4.철원3,춘천9,태백3,평창3,홍천2,화천4,횡성2 -기초18개 (전체수 광역1,기초18)
▶경기도10/가평2,고양5,과천3,광명4,광주2,구리3,군포4,김포7,남양주1,부천6,성남7,수원8,시흥5,안산5,안성2,안양5,양주2,양평3,여주3,연천1,오산2,용인8,의왕2,의정부7,이천3,파주4,평택7,포천3,하남3,화성9-기초30개 (전체수 광역1,기초31)
▶경상남도16/거제3,거창3,고성2,김해6,남해3,밀양3,사천5,산청1,양산2,의령1,진주5,창녕3,창원11,통영3,하동2,함안1,합천1-기초17개 (전체수 광역1,기초18)
▶경상북도20/경산2,경주7,구미4,군위1,김천2,문경3,봉화1,상주1(장학),성주1(장학),안동2,영덕3,영양2,영주2,영천2,예천2,울릉1,울진4,의성1(장학),청도2,청송2,칠곡2,포항5-기초22개 (전체수 광역1,기초22)
▶광주광역시14/광산1(장학),남구1,동구1,서구1(장학) -기초4개 (전체수 광역1,기초5)
▶대구광역시8/달서2,달성3,동구2,북구2,서구1,수성2,중구1 -기초7개 (전체수 광역1,기초9)
▶대전광역시13/대덕2,동구1(장학),서구1(장학),유성1 -기초4개 (전체수 광역1,기초5)
▶부산광역시16/강서1(장학),금정1,남구1(장학),동래1(장학),부산진구2,북구1(장학),사상1(장학),서구1(장학),수영1(장학),연제1,영도1(장학),중구1(장학) -기초12개 (전체수 광역1,기초16)
▶서울특별시18/강남2,강동1,강북2,강서1,관악1,광진2,구로3,금천3,노원4,도봉1,동대문1,동작3,마포3,서초4,성동3,성북1,송파2,양천2,영등포2,용산1,은평2,종로1,중구2,중랑1-기초24개 (전체수 광역1,기초25)
▶세종특별자치시9 (광역1)
▶울산광역시7/남구2,북구1,울주군1-기초3개 (전체수 광역1,기초5)
▶인천광역시12/강화1,계양1(장학),남동2,동구1(장학),부평1,서구3,연수2,옹진2,중구2-기초9개 (전체수 광역1,기초10)
▶전라남도24/강진2,고흥1,곡성1,광양3,나주3,담양3,목포10,무안2,보성1(장학),순천7,신안4,여수1,영광2,영암2,완도5,장성2,장흥3,진도3,함평1,해남3,화순2 -기초21개 (전체수 광역1,기초22)
▶전북특별자치도15/고창4,군산5,김제1(장학),남원2,무주1(장학),부안2,순창5,완주5,익산4,임실4,장수1,전주7,정읍1(장학),진안3-기초14개 (전체수 광역1,기초14)
▶제주특별자치도14 (광역1)
▶충청남도15/계룡2,공주3,금산3,논산4,당진4,보령2,부여3,서산4,서천1,아산6,예산2,천안8,청양3,태안1(장학),홍성3-기초15개 (전체수 광역1,기초15)

▶ 충청북도13/괴산3, 단양2, 보은1(장학), 영동2, 옥천1(장학), 음성3, 제천4, 증평2, 진천3, 청주 5, 충주3-기초11개 (전체수 광역1,기초11)

주) 기초지자체명1(장학) 표기는 출연기관으로 1개의 장학재단만 있음을 의미함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홈페이지- 지방공기업제도운영 게시판 2024.5.1

2-3. 인사청문회 조례제정 현황 및 쟁점 규정 분석

□ 인사청문회 조례제정 현황

- 「지방자치법」에는 인사청문회 관련 조례는 인사청문회의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음
-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정 현황(2024.6.24.기준)을 살펴보면, 243개 지방의회 중 114개의 지방의회가 조례를 제정해 46.9%에 그침. 광역의회 17개 중 14개(82.4%)가 조례를 제정했으며, 기초의회에서는 전체 226개 중 100개(44.2%)가 조례를 제정했음
 - 특히 대전지역 기초의회와 울산지역 기초의회 5곳 모두가 조례 제정을 하지 않았으며 부산 기초의회(18.8%), 대구 기초의회(22.2%), 전남 기초의회(22.5%), 경북 기초의회(36.4%), 서울 기초의회(40%), 인천 기초의회(40%) 등이 전국 기초의회의 조례 제정 평균비율(44.2%)보다 낮았음
 - 조례 제정이 되지 않은 광역의회는 울산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의회, 전라남도의회였으며, 대전 기초의회 5곳과 울산 기초의회 5곳임. 특히, 광역/기초의회 조례 제정이 모두 전무한 유일한 지역은 울산광역시의회와 울산 기초의회임.
-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울산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의회, 전라남도의회는 인사청문 실시 협약 또는 인사간담회 운영지침에 따라 지자체장의 인사청문(인사간담) 요청이 접수되면 의회에 인사청문(인사간담)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인사청문(인사간담)회를 진행하고 있음.

<표5> 전국 지방의회 조례제정 현황(2024.6.24. 기준)

조례제정 지방의회명.개수 / 지방의회 전체 수	조례제정 비율
114개(광역14,기초100) / 243(광역17,기초226)	46.9% (광역82.4%,기초44.2%)
강원특별자치도의회/양구군, 양양군, 원주시, 정선군, 춘천시, 태백시, 평창군, 횡성군의회-9개/19(광역1,기초18)	47.4%(광역100%, 기초44.4%)
경기도의회/가평군, 고양시, 과천시, 광명시, 구리시, 군포시, 남양주시, 수원시, 시흥시, 안산시, 안성시, 안양시, 양평군, 여주시, 오산시, 의	68.8%(광역100%, 기초67.7%)

왕시, 의정부시, 파주시, 평택시, 하남시, 화성시의회 -22개/32(광역1, 기초31)	
경상남도의회/거제시, 김해시, 남해군, 사천시, 양산시, 의령군, 진주시, 하동군, 합천군의회-10개/19(광역1, 기초18)	52.6%(광역100%, 기초50%)
경상북도의회/구미시, 김천시, 성주군, 안동시,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청도군의회-9개/23(광역1, 기초22)	39.1%(광역100%, 기초36.4%)
광주광역시의회/광산구, 남구, 북구, 서구의회 -5개/6(광역1, 기초5)	83.3%(광역100%, 기초80%)
대구광역시의회/군위군, 달성군의회-3개/10(광역1, 기초9)	30%(광역100%, 기초22.2%)
대전광역시의회-1개, 기초의회0개/6(광역1, 기초5)	16.7%(광역100%, 기초0%)
부산광역시의회/강서구, 기장군, 사하구의회 -4개/17(광역1, 기초16)	23.5%(광역100%, 기초18.8%)
서울특별시의회/강동구, 강서구, 관악구, 광진구, 금천구, 동대문구, 동작구, 서대문구, 양천구, 영등포구의회 -11개/26(광역1, 기초25)	42.3%(광역100%, 기초40%)
세종특별자치시의회-1개/1(광역1)	100%(광역100%)
울산광역시의회0개, 기초의회0개/6(광역1, 기초5)	0%(광역0%, 기초0%)
인천광역시의회0개/계양구, 서구, 연수구, 중구의회 -4개/11(광역1, 기초10)	36.4%(광역0%, 기초40%)
전남도의회0개/담양군, 목포시, 순천시, 신안군, 여수시의회 -5개/23(광역1, 기초22)	21.7%(광역0%, 기초22.5%)
전북특별자치도의회/고창군, 군산시, 남원시, 부안군, 완주군, 익산시, 임실군, 장수군, 전주시, 진안군의회-11개/15(광역1, 기초14)	73.3%(광역100%, 기초71.4%)
제주특별자치도의회-1개/1(광역1)	100%(광역100%)
충청남도의회/계룡시, 공주시, 논산시, 당진시, 부여군, 서산시, 아산시, 예산군, 천안시, 태안군의회-11개/16(광역1, 기초15)	68.8%(광역100%, 기초66.7%)
충청북도의회/괴산군, 단양군, 옥천군, 음성군, 제천시, 진천군의회-7개/12(광역1, 기초11)	58.3%(광역100%, 기초54.5%)

주 1) 심의, 입법예고중인 지방의회 조례는 표에 미반영(입법예고 중-충북 영동군의회 등)

2) 밑줄 그은 의회는 조례 제정이 전무한 의회

자료: 자치법규정보시스템 www.elis.go.kr 2024.6.24

- 자치단체의 인사청문회 관련 조례에는 일반적으로 인사청문회의 대상 직위, 인사청문회 특별위원회의 구성, 인사청문회의 운영, 인사청문회요청안의 첨부서류, 증인 등의 출석요구 등을 규정하고 있음

<표6> 인사청문회 조례 기본규정

제1조(목적) 「지방자치법」제47조의2에 따라 000의회 인사청문회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

제2조(정의) 인사청문, 인사청문대상자, 인사청문요청안,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용어 정의
제3조(인사청문 대상 직위) 법 제47조의2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직위”란 다음 각 호의 직위

제4조(인사청문특별위원회)단체장이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의회에 제출한 때에 구성되는 것으로 봄, 세부구성 방법 규정

제5조(인사청문의 운영) 인사청문회를 통한 질의,답변 방식과 증인,참고인 청취 등 증거조사

제6조(인사청문요청안의 첨부서류) 단체장이 의회에 제출 인사청문요청안에 요청사유서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증빙서류 첨부

제7조(인사청문요청안의 회부 등) 의장은 단체장으로부터 제6조에 따른 인사청문 요청안이 의회에 제출된 때에는 본회의 보고, 위원회 회부하며 의회의 인사청문 종료 기한 규정, 기간연장 등

제8조(위원의 질의 등) 모두발언,선서,질의방식, 서면질의 등 질의 세부방식

제9조(증인 등의 출석요구) 증인, 감정인, 참고인의 출석요구 방식

제10조(위원회의 활동기간 등) 인사청문회 종료 기한(인사청문 요청안 회부날부터 15일 이내), 인사청문회 기간(1~3일 이내),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의장 제출 기한 등

제11조(인사청문경과보고서) 제12조(위원장의 보고) 보고서의 내용(경과보고, 중요 증거서류 등), 본회의 보고, 단체장 송부

제12조(자료제출요구) 위원회는 그 의결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인사청문대상자의 인사청문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

제13조(검증)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검증

제14조(인사청문회의 공개) 인사청문회는 공개.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국가 안전보장,명예사생활 침해,기업개인 정보누설, 재판.수사중인 사건 정보누설 등)

제15조(인사청문대상자의 보호)인사청문대상자, 증인등이 특별한 이유로 인사청문회의 비공개 요구-위원회 의결로 비공개할 수 있음. 사유 위원회 소명

제16조(답변 등의 거부) 국가기밀사항, 형사소송법 제148조(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 거부)와 제149조(업무상비밀과 증언거부)->거부사유 위원회 소명

제17조(제척과 회피) 위원의 제척,회피 규정

제18조(주의의무) 위원의 위협적, 모욕적 발언주의, 비밀누설 금지

제19조(준용규정) 인사청문회 절차,운영 등에 관한 준용 규정

□ 조례 분석을 통해 본 인사청문회 조례 쟁점

○ 14개 광역의회 조례 비교분석을 통해 10가지 쟁점 규정을 도출함

- 자치단체 조례 대부분에 규정되고 있는 기본규정의 쟁점과 그 외 자치단체에 따라 규정하고 있는 쟁점 사항으로 나누었음
- 도출된 10가지 쟁점 규정 중 인사청문의 실효성을 높이는 규정을 발굴하여 조례 제개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인사청문회 조례 기본규정 중 쟁점사항	인사청문회 조례 기본규정 외 쟁점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사청문 요청의 임의규정-강행규정 여부 - 연임 시 인사청문 요청 대상 규정 여부 - 인사청문회 시행 단위(상임위, 특위)와 위원 구성방식 - 인사청문요청안의 첨부서류 종류 - 질의요지서 사전 제출 규정 폐지여부 - 자료제출요구 대상에 인사청문대상자 포함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사청문 준비요청서 제출 규정 여부 - 인사청문 사항 규정 여부 - 임명철회 건의 규정 여부 - 별지 서식 첨부 여부

○ 인사청문회 조례 기본규정 중 쟁점사항

① 인사청문요청의 임의규정-강행규정 여부

조례 규정	쟁점사항	세부내용	해당 지방의회
제3조 (인사청문 대상)	지자체장은 인사청문을 (임의규정)요청 할 수 있다	해당하는 직위의 후보자에 대하여 인사청문을 <u>요청할 수 있다.</u>	다수 광역의회
	- (강행규정)요청 한다	해당하는 직위의 후보자에 대하여 인사청문을 <u>요청한다.</u>	경기도의회, 광주광역시의회

② 연임 시 인사청문요청 대상 규정 여부

조례 규정	쟁점사항	세부내용	해당 지방의회
제3조 (인사청문 대상)	연임 시 인사청문요청 대상 규정 여부	규정없음	다수 광역의회
		제3조(인사청문 요청 대상) ② 도지사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연임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u>다만, 최초 임명 시에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u>	강원도의회

③ 인사청문회 시행 단위와 위원 구성방식

조례 규정	쟁점사항	세부내용	해당 지방의회
제4조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1)시행 단위 -상임위원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관 상임위원회	경남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부시장,공사공단) 소관 상임위원회(소관 출자출연기관)	서울시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다수 광역의회
	2)위원 구성 -소관상임위원 전원+의장 선임 0명 -의장 선임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	경상남도의회
		소관 상임위원전원+의장 선임 0명	경북도의회 등
		의장 본회의에서 선임(의장추천, 상임위원장 요청 등)	광주광역시의회 등

④ 인사청문요청안의 첨부서류 종류

조례 규정	쟁점사항	세부내용	해당 지방의회
제6조 (인사청문 요청안의 첨부서류)	인사청문요청 안의 첨부서 류 종류	-5가지 서류: 직업,학력,경력증명서/병역 신고사항/재산신고사항/소득세·재산세 등 납부 및체납실적/범죄경력	서울시의회 등
		-5가지 서류 외 -추가 서류(조례 규정사항 모두 기재) 1. 자기소개서 2. 직무수행계획서 3. 가족관계증명서 4. 주민등록표등본(주소변동내역 포함)	전북특별자치도 의회 등

조례 규정	쟁점사항	세부내용	해당 지방의회
		5. 주민등록표초본(주소 변동내역 포함) 6. 자격증 사본 7. 논문, 연구실적자료(연구비 등을 지원받은 내역을 포함) 8. 교통특례위반 세부내역(죄목, 과정, 처분결과사유를 포함) 9. 이사회 또는 임원추천위원회 의결서 및 의사록 사본 10.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1. 인사청문회 공개 동의서 12. 그 밖에 의회에서 요청하는 사항	

⑤ 질의요지서 사전 제출 규정 폐지 여부

조례 규정	쟁점사항	세부내용	해당 지방의회
제8조 (위원의 질의 등)	질의요지서 사전 제출 여부	제8조5항 질의하려는 경우 질의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인사청문회 <u>개회 24시간 전까지</u>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지체없이 질의요지서를 인사청문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서울시의회 등
		<u>사전제출 규정 없음</u>	충남도의의회 등

⑥ 자료제출요구 대상에 인사청문대상자 포함 여부

조례 규정	쟁점사항	세부내용	해당 지방의회
제13조 (자료제출 요구)	인사청문대상 자에게도 자료제출요구 명시	(전략)자료제출을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그밖의 기관에 대해 요구할 수 있다.	다수 광역의회
		(전략)자료제출을 <u>인사청문대상자와</u>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그밖의 기관에 대해 요구할 수 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 인사청문회 조례 기본규정 외 쟁점사항은 다음과 같음.

① 인사청문 준비요청서 제출 규정 여부

조례 규정	쟁점사항	세부내용	해당 지방의회
제0조 (인사청문 준비요청)	인사청문 준비요청서 제출 규정	도지사는 인사청문을 요청하기 전에 인사청문회가 열려야 할 회기의 전전 회기 폐회일의 다음 날부터 인사청문회가 열려야 할 회기의 직전 회기 개회일 15일 전까지 도의회에 “별지 제1호서식”의 인사청문준비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강원특별자치도 의회

② 인사청문 사항 규정 여부

조례 규정	쟁점사항	세부내용	해당 지방의회
제0조 (인사청문 사항)	인사청문 사 항 규정 명문 화	제7조(인사청문 사항) 위원회는 인사청문 대상자에 대한 다음 사항에 관하여 인사청문을 실시한다. 1. 자질·태도 및 경영능력, 전문성 등 직무수행 능력 2. 병역에 관한 사항 3. 형사처벌·행정제재 및 조세납부에 관한 기록 등 준법의식 4. 업무수행상 이해충돌 가능성 등 공정성 5.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있는 도덕적 흠결 유무 등 도덕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인사의 투명성과 책임성 등 인사청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광주광역시 의 회, 충남도의회, 전북특별자치도 의회

③ 임명철회 건의 규정 여부

조례 규정	쟁점사항	세부내용	해당 지방의회
제0조 (임명철회 건의)	임명철회 건 의 규정 명문 화	조례 제0조(임명철회 건의) 의장은 인사청문대상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답변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의 답변 또는 자료를 제출하는 등의 사유로 부적합하다고 위원회가 의결한 경우에는 시장에게 임명 철회를 건의할 수 있다.	서울시의회, 경 기도의회 (기초의회:경남 합천군의회)

④ 별지 서식 첨부 여부

조례 규정	쟁점사항	세부내용	해당 지방의회
해당 조항	별지 서식 첨부 여부	[별표] 작성방법(제6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인사청문준비요청서 [별지 제2호서식] 인사청문요청서 [별지 제3호서식] 자기소개서 [별지 제4호서식] 직무수행계획서 [별지 제5호서식] 이력서 [별지 제6호서식] 병역사항현황서 [별지 제7호서식] 재산보유현황서 [별지 제8호서식] 세금납부·체납에 관한 현황서 [별지 제9호서식]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별지 제10호서식] 인사청문회 공개 동의서 [별지 제11호서식] 서면질의서 [별지 제12호서식] 서면답변서 [별지 제13호서식] 질의요지서 [별지 제14호서식] 인사청문경과보고서	강원도의회

2-4. 인사청문회 관련 시행 사례와 시사점

□ 인사청문회 시행 관련 사례

○ 지자체장의 조례 재의 요구 사례

- 서울 중구의회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의결하자 구청장이 “인사권을 침해하고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며 재의를 요구했고(2023.7.), 의결정족수 미달로 조례안이 부결되었음(2024.1.) 그 후, 조례안이 재발의되어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으나 재차 중구청장이 재의 요구하였음(2024.3.)

○ 지자체장의 인사청문 요청 거부 사례

- 세종시, 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임원추천위 추천, 이사회승인 임명(2024.2.)
- 인천서구, 공단 이사장 일방 임명(2024.2.): 인사청문 요청을 거부한 사유로 조례는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에 따라 강제성을 띠지 않으며, 이미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 검증하였기에 인사청문회는 기능 중복임.

○ 조례 규정 개선 제기 사례

- 행안부의 경기도의회 조례에 대한 법 위반 제기(2024.1.) : 경기도에는 정무직 국가공무원인 부지사가 없는 탓에 조례 제3조(인사청문 대상)의 '정무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지사' 조항을 삭제해야 하고, '도지사는 인사청문을 요청한다.'는 조항은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 지방자치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이유임.
- 인천시의회 : 지방자치단체장이 정무직·일반직 또는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부지사도 인사청문회 대상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2023.9.)
- 서울시의회 : 인사청문회 대상에 지방공무원인 정무부시장을 포함하는 '지방자치단체 인사청문회 관련 규정 개선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2023.9.)

○ 인사청문회 시행 사례(의정부시의회/전주시의회/구미시의회/수원시의회)

- 인사청문회는 일반적으로 2~3일에 걸쳐 진행
- 1일차에는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와 추가자료 요구목록 채택 등의 안건 처리
- 2일차는 1일차 종료 일정기간 후에 인사청문회를 개최하는데 청문회 순서는 선서/모두발언(자기소개, 직무수행계획)/질의답변(직무수행능력 검증과 도덕성 검증 구분 진행하거나 혼합 진행)임.
- 3일차(또는 2일차)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인사청문회를 종료함
- 확인된 인사청문회 시행 쟁점은 도덕성 검증 관련 공개 여부로 대다수 조례에는 인사청문회를 공개한다는 규정이 있으며 다만, 위원회 의결로 명예, 사생활 침해 시 비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
- 인사청문회 시행 시 후보자에게 명예·사생활 침해가 우려될 경우 비공개를 요청할 수 있음을 안내한 후 공개 진행하는 지역(구미시의회, 수원시의회)이 있으며 반면,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수립 시 자체 판단으로 비공개로 진행하는 지역이 있음.(의정부시의회, 전주시의회)

□ 인사청문회 시행 사례의 시사점

-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 인사청문회의 취지를 무시하고 의도적으로 인사청문을 거부(조례 재의요구, 인사청요청안 제출거부)하는 흐름이 존재하여 나쁜 선례로 작용될 우려가 있음.
- 지자체장의 인사청문요청 의무 규정화와 청문대상 직위 확대에 대한 개선 요구가 제기되고 있어 국회와 정부 부처에서 공론화를 통한 법 개정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실효성있는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도록 인사청문회 시행 세부방식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함. 인사청문회 시행 사례에서 확인된 도덕성 검증 공개여부는 구민의 알권리 보장과 조례의 인사청문회 공개 규정 이행에서 엄청난 차이가 발생함.

3. 나라살림연구소 의견

- 지방자치단체 인사청문회 조례 입법을 통해 인사청문 대상의 신규 임명 또는 연임 시의 인사청문 진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함.
 -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인사청문회 조례제정률은 46.9%에 그치고 있음.
 - 인사청문회 조례 제정률이 전국적으로 왜 낮은지, 특정 지역은 왜 0%인지 이유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지자체장과 의회 의원 다수가 같은 정당 소속으로 지자체장의 인사행위 검증을 소극적으로 하려는 의도는 없는지 살펴봐야 함.
- 인사청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례 제·개정 필요
 - 인사청문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광역의회 조례 분석을 토대로 도출된 조례 쟁점 규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i) 연임 시 인사청문요청 대상 규정(강원도의회 조례)
 - ii) 인사청문요청안의 첨부서류 종류 확대(전북특별자치도의회 등)
 - iii) 질의요지서 사전 제출 규정 폐지(충남도의회 조례 등)
 - iv) 자료제출요구 대상에 인사청문대상자 포함(전북의회 조례)
 - v) 인사청문사항 규정(광주광역시의회 조례 등)
 - vi) 임명철회 건의 규정(서울특별시의회, 경기도의회 조례)
 - vii) 별지서식 첨부(강원도의회 조례)
- 인사청문회 시행 세부 방식의 개선 필요
 - 주민 알권리 보장을 위한 인사청문회의 공개는 물론, 도덕성 검증도 최대한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인사청문회 시행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인사청문 대상자에 대한 제출요구 자료목록 등은 우수사례를 발굴해 적용할 필요가 있음.
- 인사청문요청 의무화 여부, 대상 확대 여부 등 법 개정 시급
 - 지자체장의 인사청문요청 의무화와 정무직, 별정직 지방공무원인 부시장·부지사에 대한 인사청문 대상 직위 확대 등의 방향으로 「지방자치법」 개정 필요